

박도원 행정법 강의계획서

cafe.daum.net/dowon-publiclaw

“기출분석을 통한 사례풀이 포맷 완성”

5급공채, 사시, 입시, 변호사시험 문제를 분석한 자료를 통한 논점 추출과 사안 포섭능력 향상을 위한 집중훈련!

“단권화 완성 및 암기자료 정리”

기출분석 자료의 핵심논점을 별도로 정리한 ‘행정법 실전논점’ 을 통한 암기 사항의 정리 및 단권화작업 완성!

■ ■ 담 당 박 도 원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행정법 전공)
- 경희입법연구회 회원

- ■ 강의일정 2016년 11/22(화) ~ 12/9(금), 총 16회
※ 주 3회, 1시간 / 50점 모의고사 진행됩니다.

- ■ 시 간 [오후 실강반]
1) 1시간 복습시험 : 격일로 복습 모의고사 진행 (1시~2시)
2) 강의시간 : 시험 있는 날 _ 2시 10분 ~ 5시 20분 / 시험 없는 날 _ 1시 40분 ~ 5시 10분

- [당일 저녁영상반]
1) 1시간 복습시험 : 격일로 복습 모의고사 진행 (6시~7시)
2) 강의시간 : 시험 있는 날 _ 7시 10분 ~ 10시 20분 / 시험 없는 날 _ 6시 40분 ~ 10시 10분

- [익일 오전영상반]
1) 1시간 복습시험 : 격일로 복습 모의고사 진행 (8시~9시)
2) 강의시간 : 시험 있는 날 _ 9시 10분 ~ 12시 20분 / 시험 없는 날 _ 8시 40분 ~ 12시 10분

- ■ 강의교재 ▶ 주교재 : 각자 기본서 + 행정법 10개년 기출분석집(제공)
▶ 부교재 : 행정법 암기장(제공) + 행정법 실전논점(제공)

- ■ 강의목표 1. 사례풀이의 포맷 완성
쟁점의 정리 또는 논점의 정리에 아직도 설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면 사례풀이의 기본 포맷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2순환에서는 답안지의 논리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목차의 논리적 구성을 집중적으로 훈련합니다.
2. 교과서의 양적 지식을 질적 실력으로의 전환
그동안에 쌓은 양적 지식을 질적 실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수험적합적인 지식으로 체계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출분석을 통해 그동안 배운 내용을 답안지에 어떻게 현출할 것인지 고민하고, 논점추출과 사안포섭 능력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둡니다.

3. 도원결의 스터디 구성

원하는 분들에 한해 스터디를 조직하여 강의리뷰와 복습강제를 위한 도원결의스터디를 진행합니다. 강의를 끝까지 듣지 못하는 분들이나 강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도원결의 스터디를 통해 스스로를 강제하시기 바랍니다.

4. 답안지 상담

강의 후에 답안지 상담을 병행합니다. 답안지 상담시 다른 학생의 답안지와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스터디팀별 또는 개인의 경우 다른 순환과 마찬가지로 5명 이상 답안지 돌려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의특징

1. 답안지의 논리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목차의 논리적 구성의 집중연습으로 사례폴이의 포맷을 완성
2. 최근 10개년 기출의 완벽한 분석을 통해 파편화 되어있는 행정법 지식들을 답안지에 직접 적용 할 수 있도록 논점추출과 사안포섭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에 중점
3. 강사 직접 지도의 '도원결의 스터디' 를 통해 PSAT 준비에 부담이 없는 한도 내에서 효율적인 행정법 복습을 유도
4. 1:1 답안지 상담을 진행(실강자는 최소 1회 이상의 답안지 상담을 강제)하고 상담 시 다른 답안지와 비교·분석 할 수 있도록 지도
5. 새로운 자료를 최소화하고 각자의 기본서와 사례폴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학습량을 줄여 강의시간만으로 모든 것을 소화 할 수 있도록 강의진행

■ 당부의 말씀

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1차 부담으로 인해 2순환은 2차 과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면탈자나 1차에 자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의시간에 대부분의 내용을 소화시킨다는 각오로 2순환에 임해야 합니다.

2순환에서는 행정법 10년 기출분석집을 통해 논점추출과 사안포섭에 주력하게 됩니다. 이번 2순환에선 특히 강의시간에 리마인드 훈련법을 적용시켜 배운 내용을 누적적으로 복습할 수 있도록 훈련하겠습니다.

리마인드 학습법을 위한 모의고사 3단계정리는 2순환에서는 자료 가공시간을 감안하여 **제가 직접 자료로 배포하고 강의시간에 모의고사와 중요기출을 리마인드하겠습니다.**

(초시합격 제자들은 리마인드학습법을 통한 누적적 복습의 필요성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2순환에서도 자기에게 맞는 스터디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원하는 스터디가 있는 경우에는 카페에서 스터디 결성을 하셔도 좋습니다.

2순환은 그동안의 지식의 양적 축적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순환입니다.

10년 기출분석자료를 통해 논점추출연습과 목차구성하는 법, 사안포섭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내년 합격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2순환에서 새로운 각오와 열정 그리고 성실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진도별 강의내용(진도별 핵심논점)

강의회차	날짜	강의내용
■ 제 1 회	11월 22일(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법률유보의 원칙, 법의 일반원칙(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원칙의 행정법 적용 영역, 부당결부금지원칙)
■ 제 2 회	11월 23일(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위법성 확인, 효력 부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특별권력관계 사인의 공법상 행위
■ 제 3 회 (제1회 모의고사)	11월 24일(목)	법규명령(법률에 의한 행정입법 형식의 인정여부, 법규명령의 한계), 행정입법의 통제, 행정규칙(법적 성질과 구속력, 사법적 통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제 4 회	11월 25일(금)	행정계획(법적 성질, 계획재량의 통제, 계획보장청구권, 계획변경청구권),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일반처분-횡단보도 설치,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판단여지
■ 제 5 회 (제2회 모의고사)	11월 26일(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허가, 특허, 인가, 영업허가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 부관(종류, 한계, 독립쟁송가능성, 독립취소가능성), 처분시 적용법령과 신뢰보호,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제 6 회	11월 28일(월)	절차의 하자, 내용에 관한 하자(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하자승계, 취소의 취소, 행정행위의 철회, 단계적 행정결정(사전결정의 구속력), 공법상 계약(인정범위 및 한계, 적법요건)
■ 제 7 회 (제3회 모의고사)	11월 29일(화)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대집행, 과태료, 과징금, 명단공표, 관허사업의 제한) 행정절차법(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의견진술절차) 인·허가의제제도, 절차의 하자(독자적 위법성) 정보공개(비공개대상 정보)
■ 제 8 회	11월 30일(수)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공무원의 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 배상책임자
■ 제 9 회 (제4회 모의고사)	12월 1일(목)	행정상 손실보상(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 손실보상의 요건, 간접손실, 생활보상), 행정심판의 종류(의무이행심판), 재결의 종류(의무이행재결), 재결의 효력(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 처분)
■ 제 10 회	12월 2일(금)	행정소송의 종류(무명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대상적격(행정계획, 사실행위, 중간행위, 거부행위, 신고의 수리거부행위, 경고,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p>■ ■ 제 11 회 (제5회 모의고사)</p>	12월 3일(토)	원고적격(원고적격의 요건, 경업자소송, 경원자소송, 인인소송, 단체소송), 협의의 소이익(제12조 후문의 해석,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부수적 이익이 있는 경우,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제재적 처분의 전력이 장래의 제재적 처분의 가중요건인 경우
<p>■ ■ 제 12 회</p>	12월 5일(월)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제소기간,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집행정지의 요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p>■ ■ 제 13 회 (제6회 모의고사)</p>	12월 6일(화)	일부취소, 사정판결,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 및 판결의 기준시, 취소판결의 효력(기속력의 내용, 기판력의 내용)
<p>■ ■ 제 14 회</p>	12월 7일(수)	정부조직법과 위임위탁규정에 근거한 위임/재위임 가능성, 권한의 대리, 권한의 위임(내부위임, 위임의 근거, 위임의 효과),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분, 조례(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법률유보의 문제, 법률우위의 문제, 조례의 통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명령·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소, 지방의회에 대한 감독청의 재의요구지시 및 제소, 감독청의 제소지시와 직접제소)
<p>■ ■ 제 15 회 (제7회 모의고사)</p>	12월 8일(목)	공무원법 임용요건결여의 효과, 공무원관계의 변경(직위해제), 공무원관계의 소멸시 권리구제,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공물의 성립과 소멸, 공물의 시효취득의 제한 공물의 사용관계(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 특허사용,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변상금부과처분)
<p>■ ■ 제 16 회</p>	12월 9일(금)	공용수용의 절차(사업인정의 요건, 재결의 효과)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관계, 환매권,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발동 경찰권행사의 한계(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책임의 승계)